

◎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4-2호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부재의 사유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24년 01월 24일

평택해양경찰서장

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(과태료, 면허경고) 부과 통지

- 공고사유: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수령여부 확인 불가, 연락 부재
- 공고기간: 공고일부터 15일간
- 공고대상:

성명	소재지	행정처분
현○운	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(이하생략)	과태료 600,000원

- 부과원인: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(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) 위반
-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: 납부 전용계좌(농협 301-0260-2542-71)
 - 인터넷지로(giro.or.kr)에서 납부
 -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(국고금계좌)로 계좌이체(23:00까지)
- 납부기한: 2024.2.3.

<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>

-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해양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,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 (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)
-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.
-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 -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의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